

# 변경 대비표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밸류웨이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(주식)

□ **변경 사항:**

- (1)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집합투자기구 변동성 업데이트
- (2)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**효력발생 예정일**: 2019년 6월 27일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	(생략)	<b>업데이트</b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표준편차 : 12.02%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<b>표준편차 : 11.32%</b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b>업데이트</b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나. 과세 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단, 의료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	나. 과세 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분리과세한도 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<b>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</b> -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-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<b>업데이트</b>		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<b>업데이트</b>		

